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8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952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8194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홍성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민경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윤형진

변론 종결 2021. 8. 24.

판결 선고 2021.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여주시 C 답 47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4.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5. 2. 접수 제12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0602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D은 원고로부터 여주시 E 답 4248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8,336,83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165,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1, 2호증).

2. D의 처분행위

D은 동생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4.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9.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5호증).

3.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9. 5. 2.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갑 3, 4, 6, 7호증). 아래 표 순번 2 내지 5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19. 7. 17.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인바, 시가감정을 거치면 적극재산의 가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토지	131,587,500
2	여주시 G 전 4037m ²	338,547,600
3	여주시 H 전 324m ²	28,836,000
4	여주시 E 답 4248m ² 와 지상 건물	411,774,000
5	여주시 I 전 539m ²	40,425,000
합계	951,170,100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갑 4호증).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의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소극재산은 이보다 약간 적다.

1	원고	486,340,2541)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강제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청구금액
2	J조합	114,623,066
3	K조합	134,612,632
합계	735,575,952	

다.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루어진 강제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D의 적극재산(819,582,600원)이 소극재산(735,575,95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김수정

1)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강제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청구금액